

科學技術振興을 위한

免稅條項 解說



科學技術處 法務官 朴炳德

(一) 租稅減免規制法

第13條(所得計算의 特例) ① 韓國科學技術研究所 育成法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科學技術研究所에 支給되는 出損金과 委託研究費는 이를 支給한個人 또는 法人에 對한 所得稅法 또는 法人稅法에 依한 課稅所得計算에 있어서 이를 必要經費 또는 損金에 각각 算入한다.

② 前項의 規定은 科學技術振興法 第11條의 規定에 依한 科學技術基金의 助成을 為하여 寄附金과 科學技術處長官이 추천하는個人 또는 團體에 研究費 또는 研究施設費로 支給되는 寄附金에 對하여 이를 準用한다.

【出損金 또는 委託研究費】 出損金이라함은 一定한 目的下에 自意의으로 自己의 資產인 金品을 提供하여 他人을 援助하는 것으로서 一種의 寄附金을 意味한다. 委託研究費라 함은 科學技術處長官이 必要한 課題를 選擇하여個人 또는 研究機關에 委任하여 研究시키는 費用을 말한다.

【課稅所得計算】 課稅所得이 무엇이냐에 關하여서는 學說은 區區하나 그 代表의인 學說은 財產增加說, 純資產增加說 및 그 修正說로서 所得源泉說이 있는데 財產增加說은 이른바 包括說로서 一定期間中에 財產의 增加部分을 所得이라고 하고 이 包括說을 修正하고자 하는 限定說이 登場하였는데 이 代表의인 學說이 곧 所得源泉說이다. 이 所得源泉說에 의하면 特定의 所得源泉으로부터 繼續的 反複의이며 規則的 으로 經濟主體(自然人인個人과 權利主體인法人)에 彙屬하는 經濟的利益을 所得 即 課稅所得이라고 하

는 說이다. 이 兩說의 差異는 所得源泉說에서는 一時의인 性質을 가진 收入은 所得의 概念에서 除外되는데 反하여 財產增加說에 있어서는 所得의 概念에 包含시키려는데 있다. 그런데 現行 所得稅法에서는 各事業年度(例示 一定期間, 一年 或은 6個月)의 所得은 그 事業年度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益金의 總額에서 그 事業年度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損金(所得을 얻기 위하여 事業上 및 非事業上支出되는 必要經費 및 損金)의 總額을 控除한 金額을 課稅所得으로 보고 있다.

【必要經費 또는 損金】 必要經費와 損金에 對하여서 所得稅法 第21條와 法人稅法 第18條를 說明할 때 言及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重複을 피하기 위하여 省略하겠음.

本條 第1項의 意味를 包括的으로 말하면 自然人인個人이나 法人이 韓國科學技術研究所에 支給한 出損金이나 委託研究費에 對하여서는個人인 경우에는 所得稅 或은 法人稅 경우에는 法人稅를 賦課할 때 그가 支給한 出損金이나 委託研究費를 必要經費 또는 損金으로 보고 그 支給額에 對해서 所得稅나 法人稅를 控除한다는 意味이다. 그 理由는個人이나 法人에 對한 課稅는 한 會計年度의 總收入 金額에서 必要經費나 損金을控除한 純益金(課稅所得)에 對하여만 所得稅 및 法人稅를 賦課徵收하기 때문이다. 「前項의 規定은 科學技術振興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科學技術基金의 助成을 為한 寄附金과 科學技術處長官이 추천하는個人 또는 團體에 研究費 또는 研究施設費로 支給되는 寄附金에 對하여 이를 準用한다」라는 말은個人이나 法人이 科學技術基金의 助成을 위하여 寄附를 하였다면 科學技術處長官이

特定한個人이나或是研究 및 學術團體에 對한研究費나 施設費에 使用하도록 寄附한金品에 對하여서는 免稅한다는 規定이다. 換言하면 如斯한金品은 必要經費 또는 損金에 算入한다는 말로서 所得稅나 法人稅의 課稅所得額에서 控除한다는 意味이다.

(二) 科學技術振興法

- 第11條(科學技術基金) ① 科學技術處長官은 科學技術에 關한 調查·研究와 振興을 위하여 政府의 出捐과 外國機關의 援助金 및 一般으로부터의 寄附金으로 科學技術基金을 設置할 수 있다.
② 政府는 科學技術에 關한 調查·研究와 國家의 으로 必要로 하는 科學技術事業에 從事하는 團體 또는 個人에게 必要한 資金 또는 獎勵金을 交付하거나 用役을 委託할 수 있다.
③ 科學技術基金의 運用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科學技術基金】 第1項의 規定은 基金助成의 資源에 關한 事項을 規定하였는데 그 資源은 政府의 出捐金(國庫補助金)과 外國의 各機關으로부터 받는 援助金 및 個人 또는 法人體로부터 받은 寄附金으로 科學技術基金을 設置한다는 規定이다.

【科學技術事業에 從事하는 團體 또는 個人에게 必要한 資金 또는 獎勵金을 交付하거나 用役을 委託할 수 있다】

政府는 國家의 으로 必要한 科學技術事業에 從事하는 學術 및 研究團體라면 個人(如斯한 學科를 專攻한 學者)에게 經濟的인 援助를 한다면가 或은 如斯한 個人 및 團體에게 必要한 研究課題를 委託하여 調査 및 研究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다.

(三) 法人稅法

- 第18條(非指定寄附金과 接待費의 損金不算入) ① 內國法人이 각事業年度에 支出한 金額으로써 다음 각號의 寄附金(이하 “指定 寄附金”이라 한다) 이외의 寄附金과 接待費 또는 이에 類似한 費用의 合計金額이 營業稅 課稅標準이 되는 金額 또는 이에 準하는 性質의 金額에 100分의 2를 乘하여 算出한 金額과 當該事業年度의 所得金額에 100分의 7을 乘하여 算出한 金額의 合計額을 超過하는 金額은 그 支出한 事業年度의 損金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營業稅法 第1條에 계기하는 保險業·金融業 其他 服務業을 經營하는 法人의 非指定寄附金과 接待費의 限度額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技術振興을 為한 寄附金과 獎勵金 및 學術研究를 為한 寄附金.

個人과 法人은 權利主體로서 여러가지 經濟的 活動에 의한 利益金 即 所得에 對하여 國家는 國庫收入을 確保하기 위하여 個人에 對하여서는 所得稅法에 의한 租稅인 國稅를 賦課徵收하고, 法人에 對하여서는 法人稅法에 의한 租稅인 國稅를 賦課徵收하는데 이 兩者的稅源은 純益 即 當該事業年度의 總收入에서 經費(必要經費와 損金을 包含)을 控除한 所得으로하는 國稅인 直接稅이다.

內國法人과 外國法人 現代 民法이나 商法에는 內國法人과 外國法人을 區分하는 具體的인 規定이 없고 一般的으로 內國法人과 外國法人을 區分하는 學說로서 重要한 說을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1. 社員國籍說
2. 設立準據法說
3. 所住地說
4. 設立地說
5. 株式引受地說

6. 事業中心地說 등이 있는데 其中에서 設立準據法說이 一般的으로 認定된 通說로 되어 있다. 이 學說에 의하면 內國法人이라 함은 我國法律에 의하여 設立된法人을 말하며 外國法人이라 함은 外國法律에 의하여 設立된法人이라고 하는데 이는 民法 第31條 및 商法 第617條에 規定된法人과 解釋上 符合되고 있다. 그러나 法人稅法에서는 國內에 本店 또는 主事務所를 둔法人을 內國法人이라 하고 外國에 本店 또는 主事務所를 둔法人을 外國法人으로 보고 있다.

이 兩者를 區分하는 實益은 內國法人은 國내 또는 外國에서 發生한 全所得에 對하여 法人稅를 賦課徵收하는데 反하여 外國法人에 對하여서는 國내에서 獲得한所得, 말하자면 國內源泉所得(이 所得에 對하여서는 稅法上 具體的으로 明示하고 있음)에 對하여서만 法人稅를 賦課徵收하는 點에 있다.

公開法人과 非公開法人 現行 法人稅法의 特色은 公開法人과 非公開法人을 區別하고 있다는 點이다.

그 理由는 우리나라 法人體의 大部分이 個人企業 또는 同族會社의 배우리를 有する 法人體로서 時代에 부응하여 高度의 經濟成長과 國際的인 競爭에서 要求되는 資本調達이 前近代의 個人企業形態에 對하여서는 不充分함으로 資本調達에 充實을 기하기 위하여 公開法人의 育成을 꾀하고 있다.

稅法上 公開法人과 非公開法과의 區分에 關하여 嚴格한 規定을 두고 있는데 公開法人이 되는 要件은 다음과 같다.

1. 韓國證券去來所에 株式를 登場한法人
2. 公募하는法人으로서 募集 또는 公募하는 株式이 發行總株式數의 10% 이상이 되는法人

3. 小額株主가 發行總株式數의 20% 이상을 所有할 것.

4. 小額株주의 數가 30名 이상일 것

5. 株주의 1人과 民法上의 親族이 所有하는 株式的 總數가 發行總株式數의 60% 이하일 것 등이다.

以上의 公開法人과 非公開法人을 區分하는 實益은 公開法人은 非公開法人보다 優待措置로서 低稅率를 適用하고 있다.

【各事業年度】 法人稅法上의 各事業年度라 함은 法令 또는 法人の 定款, 規則 등의 規定한 法人の 經濟活動의 한 會計期間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期間은 1年을 超過하지 못하도록 規定하고 있는데 이 事業年度는 法人稅의 課稅期間이 되는 一定期間을 말하는 것이다.

原來 法人の 活動은 그 性質上 永續的으로 經濟活動을 營爲하는 것이므로 國家는 課稅의 公平, 法人の 會計處理에 開한 不正防止 國家歲入時期의 確定 및 課稅所得計算의 正確性을 기하기 위하여 法人の 經濟活動의 한 期間을 1年 내지 6個月로 規定한 것이 法人の 各事業年度이다.

【指定寄附金】 稅法上의 寄附金이라 함은 他人(使用人外)에게 法人の 事業活動과는 直接의인 關係 없이 無償으로 支出하는 自意의in 財產의 贈與行爲로서 民法上 財產의 出捐과 類似하며 社會 通念上으로서도 他人에게 無償援助한다는 點에서 같다.

寄附金과 接待費의 差異點은 寄附金은 法人の 事業과는 直接關係 없이 他人에게 無償援助인데 反하여 接待費는 自己事業과 直接 或은 間接으로 事業의 번영을 위하여 支給하는 經費이다. 그러나 稅法上에서는 寄附金이나 接待費는 다같이 損金 및 必要經費에 算入한다는 點에서 이 兩者를 區分할 實益이 稀薄하다. 法人稅法上 全額損金으로 算入하는 寄附金(指定寄附金)은 다음과 같다.

Ⓐ 國防獻金

Ⓑ 恤兵金

Ⓒ 國家機關에 無償으로 寄贈하는 金品의 價格

① 天災地變으로 인한 罷災民의 救護金品의 價格

② 大韓亦十字社에 提供한 寄附金이나 有功會費

③ 技術振興을 爲한 寄附金과 獎學金 및 學術研究를 爲한 寄附金

④ 學校의 教育上 必要한 施設을 爲한 寄附金

⑤ 運動機能向上을 爲한 寄附金

「寄附金과 接待費 또는 이에 類似한 費用」 여기서 말하는 寄附金과 接待費는 全額 免稅되는 即 全額이 損金에 算入되는 것이 아니고 條件附로 損金에 算入되는 寄附金과 接待費를 意味하는 것이다.

이에 類似한 費用이라 함은

Ⓐ 接待費

Ⓑ 交際費

Ⓒ 機密費

Ⓓ 謝禮金

Ⓔ 기타 前名號와 同一한 性質의 支出金 등을 말하는 것이다.

【營業稅課稅標準】 되는 金額 또는 이에 準하는 性質의 金額】 营業稅課稅標準이 되는 金額이라 함은 法人の 한 事業年度內에서 獲得한 總收金 即 外形金額을 말하는 것이다.前述한 바와 같이 法人은 業種에 따라 事業年度를 1年間 或은 6個月로 하고 있다.

여기서 外形金額이라 함은 한 法人이 한 事業年度內의 總收入金에서 損金을 控除하지 않은 全體의 金額을 意味한다.

이에 準하는 性質의 金額이라 함은 本來의 基本의 事業 即 主된 事業에서 獲得한 金額 以外에 附隨의 으로 獲得되는 金額을 말한다. 例示하면 建設業을 營爲하는 者가 세멘트푸대 등을 賣却하여 얻은 金額을 말한다.

【當該事業年度의 所得金額】 當該事業年度의 所得金額이라 함은 法人이 한 事業年度中의 收益總額中에서 損金을 控除한 所得額, 換言하면 法人稅法上의 課稅所得額을 말하는 것이다. 即 营業稅는 法人이 한 事業年度의 收益總額을 課稅標準으로 하는데 反하여 法人稅는 收益總額에서 損金을 控除한 純益金을 所得으로 보고 이에 對하여 課稅한다는 點이 다르다.

本條의 意味를 包括의 으로 말하면 法人이 한 事業年度의 支出한 指定寄附金 以外의 支出한 寄附金 및 接待費(非指定寄附金)과 이에 類似한 費用을 合計한 金額이 营業稅 課稅標準이 되는 金額 또는 이에 準하는 性質의 金額에 100分의 2를 乘하여 算出된 金額과 當該事業年度의 所得金額에 100分의 7을 乘하여 算出된 金額의 合算額을 超過하는 金額은 損金으로 認定하지 않고 그 超過金額을 法人の 所得金額으로서 課稅한다는 말이다.

例示하면 寄附金과 接待費(非指定寄附金) 및 이에 類似한 費用으로 支出된 總金額이 3萬원이라고 하고 营業稅課稅標準이 되는 金額과 이 準하는 性質의 金額을 百萬원이라고 假定하면 $1,000,000 \times \frac{2}{100} = 20,000$ 원과 當該事業年度의 所得金額을 拾萬원이라고 假定하면 $100,000 \times \frac{7}{100} = 7,000$ 원의 合計額이 27,000 원이 되므로 $30,000 - 27,000 = 3,000$ 원 即 超過된 3,000 원은 所得金額 100,000 원에 加算한 103,000 원에다 法人稅를 課稅한다는 말이다.

「大統領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法人稅 法施行令(大統領令)은 다음과 같다.

令第32條 (保險業 등의 非指定寄附金과 接待費의 損金 不算入) 法第18條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保險業 金融業 또는 其他의 サービス業을 經營하는 法人의 非指定寄附金과 接待費의 限度額은 각事業年度에 支出한 金額으로서 營業稅 課稅標準이 되는 金額 또는 이에 準하는 性質의 金額에 100分의 2를 乘하여 算出한 金額과 當該事業年度의 所得金額에 100分의 12를 乘하여 算出한 金額의 合計額으로 한다 라고 規定하고 있다.

本條 但書에서 말하는 保險業 金融業 其他 サービス業은 事業經營上, 對外關係와 對人關係가 다른 事業에 比하여 많고 그 處事를 如何히 하느냐에 따라 그 事業에 미치는 影響이 클 뿐만 아니라 그 事業의 性質이 第三者와의 密接한 去來關係를 中心으로 하는 만큼 事業經營上 支出이 크다는 點을豫想하여 損金(免稅對象金額)의 金額을 他事業보다 단이 認定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一般的인 事業에서는 當該事業年度의 所得金額에 100分의 7를 損金으로 取扱하는데 反하여 保險業 金融業 其他 サービス業을 經營하는 者에 對하여서는 當該事業年度의 所得金額에 100分의 12를 損金으로 認定하고 있다.

例示하면 保險業 金融業 其他 サービス業 以外 事業을 經營하는 内國法人이 本條各號에 規定한 寄附金인 指定寄附金外에 支出한 寄附金 또는 接待費등 (非指定寄附金 또는 接待費)의 合計金額이 15,000원이고 營業稅 課稅標準額 $(100,000) \times \frac{2}{100}$ + 當該事業年度의 所得額 $(10,000) \times \frac{7}{100} = 9,000$ 원이 라고 하면 $15,000 - 9,000 = 6,000$ 원은 損金으로 認定치 않고 그 金額(6,000)에 對하여서도 課稅標準으로 보는데 反하여 保險業 金融業 其他 サービス業을 經營하는 内國法人이 支出한 非指定寄附金과 接待費 등의 合計 金額이 15,000원이고 營業稅 課稅標準額 $(100,000) \times \frac{12}{100}$ + 當該事業年度의 所得金額 $(10,000) \times \frac{12}{100} = 14,000$ 원이라고 하면 $15,000 - 14,000 = 1,000$ 원은 損金으로 認定하지 않고 1,000원에 對하여 課稅標準으로 한다. 即後者는 前者보다 租稅上の 恵澤이 크다는 것이다.

(四)所得稅法

第21條 (必要經費不算入) 各期에 支給한 金額中 다음 각號에 게기하는 것은 第17條 第1項의 不動產所得 또는 事業所得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必要經費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1.所得稅

2. 罰金 科料 (通告處分에 의한 罰金 또는 科料에 상당하는 金額을 포함한다)

3. 課稅徵收法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과 滯納處分費

4. 過怠料(過料와 過怠金을 포함한다)

5. 各稅法에 規定하는 徵收義務不履行으로 인하여 納付하였거나 納付할 稅額(加算金을 포함한다)

6. 家事의 經費와 이와 關聯되는 經費

7. 寄附金中 大統領이 정하는것(指定寄附金) 이외의 寄附金과 接待費 또는 이에 類似한 支出金의 合計額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計算한 金額을 초과하는 金額

8. 固定資產減價償却額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計算한 金額을 초과하는 金額

9. 販賣하지 아니한 製品에 對한 查定필 또는 반출필 酒稅 기타 消費稅의 未納額 다만 製品價格에 그 稅額相當額을 加算한 경우에는例外로 한다.

【各期에 支給한 金額中】 個人 및 法人은 여러가지 經濟活動에 의하여 經濟的인 益金 所得을 얻게 되는데 法人에 대하여서는 法人稅法에 의하여 課稅하고 個人에 대하여서는 所得稅法에 의하여 課稅하는 것이다. 그런데 個人이나 法人이 一定期間內에 獲得한 總收入額에 대하여 課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한 金額을 獲得하기 위하여 支出된 直接 또는 間接의 → 經費와 本來의 事業과는 關係없이 支出된 一定金額을 控除한 純利得額에 대하여서만 課稅하는 것이다. 이 控除되는 金額을 法人稅法에서는 損金이라 稱하고 所得稅法에서는 必要經費라고 稱하는데 各期에 있어서 經費支出額中 如何한 것을 損金 또는 必要經費로 보느냐 하느 것은 稅法에서는 具體적으로 明示한것 以外는 그 限度金額을 定하고 있다.

「第17條第1項」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第17條 (課稅所得金額의 計算) ① 課稅所得은 다음 각號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다.

1.不動產所得

各期中의 總收入金額에서 必要經費를控除한 金額

2.配當利子所得

甲種 收入金額

乙種 各期中의 總收入金額

丙種 收入金額

3.事業所得

各期中의 總收入金額에서 必要經費를控除한 金額

4.勤勞所得

甲種給與額은 다만 年金 또는 退職給與에 대하여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金額을控除한 金額에 의한다.

(가) 一時退職給與를 除外한 退職給與 또는 年金

에對하여는 그給與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金額

(나) 一時退職給與에 대하여서는 그給與額의 100分의 75에 상당하는 金額, 乙種各期中의 總給與額은 다만 退職給與에 대하여서는 그給與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金額을 控除한 金額에 의한다.

5. 其他所得

收入金額은 다만 勝馬投票券의 購買者에게 支給하는 配當金에 대하여는 配當金에서 勝馬投票的 中者가 購入한 勝馬投票券의 券面金額을 控除한 金額에 의한다.

【必要經費】 不動產所得, 事業所得에 對應하는 計算에 있어서 總收入金額의 必要經費는 事業經營으로부터 생기는 所得을 얻기 위하여 支出되는 必要經費인 것이다. 即 所得稅法에서 所得金額(課稅標準이 되는 所得金額)의 計算을 總收金額을 그대로 所得金額으로 하는 것과 總收入金額에서 必要經費를 控除한 金額으로 하는 것 등에 있다. 法第19條에 依據 法第40條 第1項은 不動產所得 事業所得의 總收入金額에 對應하는 必要經費를 列舉하고 있는데 反하여 本條의 規定은 不動產所得과 事業所得의 計算에 있어서 必要經費로 算入하지 아니하는 것을 列舉하고 있다.

本條의 意味는 한個人이 所得을 얻기 위하여 한課稅期間內의 支出한 經費中 本條 第1號 내지 第9號에 該當하는 金額은 第17條 第1項에 規定한 不動產所得과 事業所得을 計算하는 데 있어서 必要經費로 認定하지 않고 第1號 내지 第9號에 該當하는 金額을 不動產所得 또는 事業所得으로 보고 課稅한다는 것이다. 換言하면 第1號내지 第9號에 該當하는 支出金은 總收入金額에서 控除하지 않고 그 金額을 課稅所得金額으로 보려는 것이다.

「第7號, 寄附金中 大統領令이 定하는 것 (指定寄附金)」

여기서 말하는 大統領令이라고 하는 것은 所得稅法施行令 第47條를 말하는 것으로서 行政令 第47條 ① 다음 각號에 기기하는 것은 法第21條 第7號에 規定하는指定寄附金으로서 所得金額計算上 必要經費에 算入한다고 規定하고 있는데 이 각號의 內容은 法人稅法 第18條 各號에 規定한 指定寄附金과 同一함으로 여기서는 그重複을 피하기 위하여 省略겠음.

「이의의 寄附金과 接待費 또는 이에類似한 支出金의 合計額으로써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計算한 金額을 超過하는 金額」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計算한 金額이라 함은 所得稅法施行令 第50條를 意味하는 것으로서 그는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① 法第21條 第7號의 指定寄附金 이의의 寄附金(이하 非指定寄附金이라 한다)과 接待費 또는 이에類似

한 支出金의 合計額이 營業稅 課稅標準이 되는 金額 또는 이에類似한 性質의 金額에 100分의 2를 곱하여 算出한 金額과 當該期分의 所得金額에 100分의 7을 곱하여 算出한 金額의 合計額을 초과하는 金額은 그 支出한 period의 心要經費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保險業 金融業 其他 서비스業에 對한 非指定寄附金과 接待費의 限度額은 營業稅 課稅標準이 되는 金額 또는 이에類似한 性質의 金額에 1,000分의 2를 곱하여 算出한 金額과 當該期分의 所得金額에 100分의 12를 곱하여 算出한 金額의 合計額으로 한다. 이속에서는 非指定寄附金과 接待費의 心要經費에 算入하는 方法과 限度額을 規定하고 있는데 이에 對하여는 法人稅法 第18條를 說明할 때 具體的으로 解意하였음으로 여기서 說明을 省略하겠으나 法人稅의 경우를 參照하여 주시길 바랍.

本條 第1項 第7號의 意味를 要略하여 說明하면 各期分中 支出한 金額中 所得稅法施行令 第47條에 規定된 指定寄附金을 除外한 金額, 所謂 金額을 必要經費로 認定하지 않고 一定한 限度까지만 必要經費로 認定하여 주는 非指定寄附金 및 接待費의 金額이 本施行令 第50條에 規定된 計算方法에 의하여 算出된 金額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金額은 必要經費로 算入하지 않기로 되어 있다.

(五) 所得稅法施行令

第48條 (技術振興 및 運動技能向上을 위한 寄附金의範圍) ① 前條 第1項 第6號에 規定하는 寄附金과 獎學金은 다음 각號의 1에 該當하는 것으로 한다.

1. 學校의 教育上 必要한 施設을 為하여 支出한 寄附金

2. 主務部長官이 추천하는個人 또는 團體 等에 教育費 또는 研究費로 支出한 寄附金이나 獎學金

② 第1項 第2號에서 團體等이라 함은 다음 각號에 計기하는 學校 및 團體를 말한다.

1. 學校

2. 政府로부터 許可 또는 認可를 받은 學術研究團體, 獎學團體 및 技術振興을 為한 團體

本令에서 말하는 前條 第1項 第6號에 規定한 寄附金 또는 獎學金이라 함은 所得稅法施行令 第47條 第1項 第6號에서 規定한 技術振興을 為한 寄附金과 獎學金 및 學術研究를 為한 寄附金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寄附金과 獎學金은 本條의 第1項 또는 第2項에 規定한 寄附金과 獎學金에 該當한다는 意味이며 이러한 寄附金과 獎學金을 支給한者에 對하여는 그 金額에 對하여 所得稅를 賦課하지 않는 所謂 指定寄附金으로서 金額을 必要經費로 算入한다는 것이다.